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 3. 8 화순군수
- 나. 회부일자 : 2000. 3. 8
- 다. 상정일자 : 2000. 5. 1(제8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노 양 현

나. 개정사유

o '99. 12. 28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화순군세 감면조례의 내용을 지방세법과 부합하도록 개정

다. 주요내용

가. 제2조 제목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제1항 본문중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로 하며,

동조 제2항 본문중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국가 유공자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국가 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 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취득하는일"을 "감면 신청하는"으로 개정하고,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를 신설함.

- 나. 제4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 본문중 "직계 존. 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장애인의 직계 존. 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로 하고, "취득하는"을 "감면신청하는"으로 하며 단서중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이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를 추징한다"로 개정하고,
- 다. 제9조 시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88조 및 제237조,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감 조항을 "전액 면제한다"로 하였으며 제9조 제4호를 삭제하였음.
- 라.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5세대 이상을 2세대이상으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주택법에"를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로 개정하였으며,
- 마. 제12조 제3항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2"로, "동법 시행규칙 제26조"를 "동법 제28조의 5"로 법 적용 조항을 변경하였고,
- 바. 제14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조례와 제15조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조례를 도심 교통체증 방지를 위해 삭제 하며,
- 사. 제22조의 2(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본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 및 동조 제5항 제2호, 제3호의"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로 하고, 단서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의"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 제3항의"로 하고,
- 제1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에"로 하고,

제2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제5항에'를 '조세특례제한 법 제121조의 2 제5항에'로 법 적용을 개정함.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정열)

-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규와 상부의 조례개정준칙안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폭을 확대해 주는등 지방세법 제7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을 보다 현실성 있게 확대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에 대해서는 그 유족과 소속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까지 재산세 및 종토세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자동차세의 감면 혜택도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에서 직계미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까지 확대도록 하는 반면, 1년이내에 소유권 이전이나 세대분가시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의 취지를 살리는 효과 거양
- 지정문화재와 임대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폭을 확대하고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도록 하는등 사회변천에 따른 지방세제 운용상의 미비점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선포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의결"

첨 부 : 화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0. 3.

제출자 : 화순군수

1. 제안이유

지방세(군세) 감면조례 준칙안에 의거 화순군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 및 신설코자 함

2. 주요골자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2조 제목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제1항 본문중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도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도지세를 면제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 본문중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로 하고, "취득하는"을 "감면신청하는"으로 개정하고,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를 신설함.

제1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에"로 하고

제2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5항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에"로 법 적용 조항을 개정함.

3. 관련법령 및 근거

- 전라남도 재정 13400-2282 (99. 12. 14) 호와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준칙
안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안)

화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제1항 본문중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 본문중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로 하고, "취득하는"을 "감면신청하는"으로 하며,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4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 본문중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로 하고, "취득하는"을 "감면신청하는"으로 하며, 단서중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 차세를 면제한다. <단서 신설>	- - - - -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 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자유없이 소유권을 아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4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 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대항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제4조 - - - - -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 - - 감면 신청하는 - - - -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면제한다. <단서 신설>	- - - - -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기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 추징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도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 - - - - - - - - - -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도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 3. (생 략)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신 · 구조문 대비표

신 · 구조문 대비표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장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p> <p>제15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낭해 용도 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 장 설치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 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 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 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p> <p>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 하여 1년간 (직전연도 6월 1일부터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 다.</p> <p>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 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p> <p>연간수입금액 =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 365 / 영업기간(일수)</p> <p>3. 토지에 대한 부동산 가액은 지가공시 및 도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 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 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p>	<p><삭 제></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가액을 시가표준 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22조의2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 면) 외국인 투자 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 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 · 제2호 및 동조 제5항 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 준일부터 (7) 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 년간 50%를 경감한다. 다만, 외 국인투자촉진법제12조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 세를 추징한다.	제22조의2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제4 항 및 동조 제5항의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 - - - - - - - - - - - -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 항에 - - -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 항에 - - - - -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